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

2013. 3.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1
3. 감사 중점	2
4. 감사 기간 및 인원 등	2
II. 자체감사 관련 현황	3
1. 자체감사기구 현황	3
2. 자체감사활동 현황	4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감사원법」 제28조 제1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감사기준 준수 여부, 자체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감사활동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감사도 그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자체감사활동 부진사례 등을 적발 및 시정하고 조직·인력·규정 등 제도의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체감사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표 1]과 같이 201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대상기관(145개 기관) 중에서 심사 결과 미흡기관, 기관의 규모 및 감사빈도 등을 고려하여 예비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행정안전부 등 30개 기관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실지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 분	'11년 심사결과 '미흡' 기관	예비조사결과 문제점 도출 기관
중앙행정기관(6)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광역시(4) 교육(2) 기 초(11)	울산광역시 강원도교육청 천안시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울산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순군, 금산군, 황성군, 김제시, 당진시
공공기관	공기업(3) 준정부(1) 기 타(3)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문화예술회원회 경상대학교병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감사원

감사범위는 행정안전부 등 30개 기관에서 2010년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처리한 자체감사 업무 전반과 자체감사 관련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법·타당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감사조직·인사의 독립성 및 감사관련 규정의 적정성 확보 등 자체감사 인프라가 적정하게 구축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 ① 자체감사 실시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② 범죄사실 통보 및 외부기관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 여부
- ③ 조직·인력·규정 등 자체감사 인프라의 적정 구축·운영 여부 등

4. 감사 기간 및 인원 등

이번 감사는 2012. 8. 27.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서면자료 수집·분석 및 예비조사를 한 뒤,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요원 22명을 투입해 같은 해 9. 17.부터 10. 23.까지 20일간 행정안전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질 문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는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3. 3. 14.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자체감사 관련 현황

1. 자체감사기구 현황

자체감사는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및 공감법 제2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서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말하고, 자체감사기구는 공감법 제5조 및 각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010년 7월 공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대상 64,375개 기관(2011. 12. 31. 현재) 중 공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표 2]와 같이 2012년 10월 현재 583개(중앙행정기관 43개, 자치단체 259개, 공공기관 281개)이고, 그중 감사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가 있는 기관은 377개이다. 그리고 개방적으로 감사책임자를 임용한 기관은 405개 기관이고 자체감사기구인원은 감사대상인원 1,209,368명 대비 0.58%인 6,976명이다.

[표 2] 공감법 적용 자체감사기구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감사기구		감사책임자		감사기구 현 원	감사대상 현 원
	전 담	비전담	개방직	임명직		
합 계 (583)	377	206	405	178	6,976	1,209,368
중앙행정 (43)	33	10	32	11	929	275,751
자치						
광역 (16)	15	1	15	1	677	318,942
단체						
교육 (16)	16	0	15	1	514	64,915
기 초 (227)	79	148	62	165	2,703	199,730
공공						
기관						
공기업 (28)	28	0	28	0	529	96,895
준정부 (83)	73	10	83	0	699	71,658
기 타 (170)	133	37	170	0	925	181,477

자료: 공감법 적용 자체감사기구 자료 재구성(2012. 10. 31. 기준)

2. 자체감사활동 현황

2011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대상 145개 기관·단체의 자체감사기구에서 모두 7,025회에 걸쳐 연인원 232,929명을 투입하여 [표 3]과 같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 등을 하였다.

[표 3]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

(단위: 회, 명)

구 분	합 계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합 계 (145)	7,025	232,929	2,675	96,246	1,756	61,454	452	6,636	128	6,894	2,014	61,699
중앙행정기관(35)	786	45,392	234	14,901	155	10,786	23	1,373	4	265	370	18,067
지방자치단체(36)	1,824	72,752	557	29,199	827	23,347	66	1,637	6	430	368	18,139
교육자치단체(15)	2,433	48,459	1,300	23,387	78	9,738	289	1,932	3	119	763	13,283
공 기 업 (25)	791	30,625	144	11,436	373	8,257	23	820	64	3,309	187	6,803
준정부기관(34)	1,191	35,701	440	17,323	323	9,326	51	874	51	2,771	326	5,407

자료: 공감법 적용 자체감사기구 자료 재구성(2011. 12. 31. 기준)

2011년도 자체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 등으로 지적되어 조치된 사항은 총 74,137건이었다. 그중 징계·문책 등 신분상 조치사항은 24,961건(58,111명)이고, 부족하게 징수한 세금 등을 추징·회수·보전하도록 한 재정상 조치사항은 12,763건(1조 6,898억여 원)이며, 기타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33,277건이었다. 한편,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발굴도 3,136건에 달하였다. 이를 각급 기관별로 지적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자체감사결과 지적 현황

(단위: 건, 억 원, 명)

구 분	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모범사례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합 계 (145)	74,137	16,898	58,111	24,961	58,111	12,763	16,898	33,277	3,136
중앙행정기관(35)	10,334	5,137	8,789	3,220	8,789	1,488	5,137	5,172	454
지방자치단체(36)	30,563	3,548	11,777	6,311	11,777	5,636	3,548	17,247	1,369
교육자치단체(15)	19,434	107	28,794	11,760	28,794	3,647	107	3,317	710
공 기 업 (25)	6,466	6,565	3,605	1,479	3,605	1,107	6,565	3,681	199
준정부기관(34)	7,340	1,541	5,146	2,191	5,146	885	1,541	3,860	404

자료: 공감법 적용 자체감사기구 자료 재구성(2011. 12. 31. 기준)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부적정

소 관 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0. 3. 24. 및 같은 해 5. 19. 사단법인 NK문화재단 (대표 000, 설립일: 2009. 8. 21. 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뮤지컬 ‘요덕스토리’ 미국공연(2010. 7. 9 ~ 7. 11. 예정)에 대한 보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0억 원(2010. 3. 26. 4억 원, 같은 해 5. 25. 6억 원)을 지원한 후 이에 대한 집행관리를 하였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는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및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자기 자금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2010. 1.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하고, 위 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사용내역의 입력상황, 보조금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 사용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미국 공연에 필요한 대관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집행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위원회에서는 2010. 3. 19. 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뮤지컬 지원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총 사업비(26억여 원)의 62% 상당인 16억여 원을 기업 협찬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위 재단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면 외교통상부 등이 막연히 협찬을 ‘제안’ 또는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더욱이 외교통상부의 경우 위 기관에 근무하지도 않는 ‘OOO서기관’이 위 협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자금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실제 협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위 위원회에서는 위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 2010. 7. 9.부터 같은 해 7. 11.까지 퀸스 칼리지 콜든 오디토리엄(Queens College Colden Auditorium,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미국공연을 5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공연 대행사와 위 대학의 대관계약서에는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2010. 7. 9.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에 불과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재단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위 재단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1일만 우선 대관하였고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가계약을 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대학에

확인한 결과¹⁾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서가 아다.

그런데도 위 위원회에서는 위 대학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3. 26. 1차 지원금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같은 해 5. 19. 위 재단에서 동일한 계약서를 첨부²⁾하여 2차 지원금을 요청하자 같은 해 5. 24. 6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다.

게다가 위 재단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후 2010. 5. 26. 미국 공연일 이전에 집행해야 할 지원금(숙박비 및 항공료와 2차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장비대여 및 제작비 3억 원에 대한 계약 및 계약금 지불현황 등) 사용내역을 보조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채 같은 날 5억 원을 ○○○³⁾에게 계좌이체하는 등 보조금 지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는데도 위 위원회에서는 미국 공연 예정일로부터 1개월 20일 정도가 지난 2010년 8월 말까지 아무런 확인 및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재단에서는 자체 부담금(16억 원)의 조달없이 보조금만 지급받았을 뿐, 당초 목적하였던 미국공연을 실시하지 않은 채 위 보조금을 용도불명하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위원회에서는 2010. 9. 15.부터 2011. 12. 12.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반납요청을 하였으나 위 재단에서 2012. 10월 현재까지 지원금 반납⁴⁾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보조금만 낭비하게 되었다.

-
- 1) 이번 감사기간 중 위 대학 대관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 계약서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2010. 3. 15. 위 미국공연 대행사인 크리스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요청을 받고 계약서를 발행하였으나 계약서에 서명되지 않았고 착수금도 받지 못해 2010년 봄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회신
 - 2) 위 위원회에서 1차 지원금을 지급한 후 2010. 4. 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관계약서를 추가 요구한 데 대해 위 재단에서 '미국공연은 한국공연과 달리 추가내용이 명기된 대관계약서는 발급받기 어려우며, 단지 공연 종료 후 무대사용 내역서에 따른 계산서만이 발급'된다며 기존 입장을 변경
 - 3) 요덕스토리 국내공연을 위탁받은 시행사 '티티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주
 - 4) 2011. 6. 3. 위 재단에 대해 신용조사한 결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위원회에서 2012. 4. 12. 사단법인 NK문화재단 대표 ○○○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

